

문서번호	BSKS-1-1-37
제정일자	2012.02.27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12

2012.02.27.제정 2014.02.01.개정 2016.01.01.개정 2017.09.01.개정 2020.03.03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2.28.개정 2022.04.15.개정

소관부서 : 교무처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략적인 대학경영이 가능하도록 학과 및 전공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. <개정 2020.03.03., 2022.02.28.>

제2조(용어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03.03.>

- 1. '학과 및 전공 구조조정'이란 대학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과 및 전공의 개설, 명칭 변경, 정원조정, 통합, 폐과, 분리, 폐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2.02.28.>
- 2. '구조조정 대상학과 및 전공'이란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학과 및 전공 또는 입학정원의 감축 및 증원이 필요한 학과 및 전공을 말한다. 이 경우, 전공은 별도의 모집인원이 정해 진 전공만을 대상으로 한다. <개정, 2020.03.03., 2022.02.28.>
- 3. '구조조정 실시학과 및 전공'이란 구조조정을 하여 새로이 운영 중인 학과 및 전공을 말한다. <호 변경, 2020.03.03.><개정 2022.02.28.>
- 4. '폐과'란 기존학과 및 전공을 폐지하기 위하여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. <호 변경, 개정 2020.03.03., 2022.02.28.>
- 5. '폐직'이란 폐과 및 폐전공 소속교수의 학과 및 전공 운영상의 직무를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. <호 변경, 2020.03.03.><개정 2022.02.28.>
- 6. '기준정원'이란 학과 및 전공별로 모집정원 25명에 교원수를 곱한 인원을 말한다. <호 변경, 개정 2020.03.03., 2022.02.28.>
- 7. '폐과일'이란 폐과 및 폐전공으로 인하여 해당 학과 등 신입생이 0명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. <신설 2020.03.03.><개정 2022.02.28.>
- 8. 폐과 대상 학과는 학칙상 '모집정지' 결정을 통하여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. <신설 2020.03.03.>
- 9. '모집정지결정일'이란 해당 모집단위에 대한 모집정지의 내용을 학칙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학칙을 변경한 날을 말한다. <신설 2020.03.03.>
- 10. '모집정지일'이란 학과 또는 전공의 신입생 입학정원이 최초로 0명이 되는 학칙 시행일을 말한다. <신설 2020.03.03.>



문서번호	BSKS-1-1-37
제정일자	2012.02.27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12

- 11. '폐과교원'이란 모집정지로 폐과가 예정된 학과 또는 전공에 소속된 교원을 말한다. <신설 2020.03.03.>
- 12. '정원조정'이란 구조조정 대상학과 및 전공에 대한 구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정원의 증원 또는 감원하는 것을 말하며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한다. <신설 2020.03.03.>

제3조(구조조정 기준) ① 학과 및 전공의 통합, 폐과 또는 정원 조정은 아래 기준에 의해 정한다.<개정 2020.03.03., 2022.02.28.>

구분	기준	기간	비고
신입생충원율	85% 미만	평가년도 입학생 기준	
재학생충원율	80% 미만	전년도 4월1일 기준	 대학정보공시 지표에 의함
취업률	60% 미만	전년도 12월말	
1 日世	00/0 FE	(한국교육개발원 발표 지표)	

- 1. 신입생 충원율 85% 미만인 학과/전공에 대하여는 구조조정 위원회의 심사 대상학과로 선정한다.<개정 2022.02.28.>
 - 2. 재학생충원율과 취업률 두 항목 모두 기준 미만인 학과/ 전공은 구조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학과로 선정한다.<개정 2022.02.28.>
- ② 제①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,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 화계획 또는 학과(전공)의 운영의지에 따라 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<개정 2022.02.28.>
- ③ 구조조정 기준의 적용에 따른 구조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 학과 및 전공 선정은 매년 3월초에 실시하며, 기준의 적용은

1년 단위로 산정하여 적용한다. <개정 2022.02.28.>

제3조의2(구조조정위원회) ① 학과 및 전공 구조조정을 위하여 구조조정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22.02.28.>

- ②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고, 타 학과 교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전임교원을 위원으로 선정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<개정 2020.09.25.>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 <조 신설 2020.03.03.>

제3조의3(구조조정위원회의 기능) 구조조정위원회는 구조조정 대상



문서번호	BSKS-1-1-37
제정일자	2012.02.27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12

학과 및 전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. <개정 2022.02.28.>

- 1. 학과 및 전공의 개설, 명칭변경, 정원조정, 통합, 폐과, 분리, 폐직 등에 관한 사항<개정 2022.02.28.>
- 2. 학과 및 전공의 개설, 명칭변경, 정원조정, 통합, 폐과, 분리, 폐직 등에 따른 교원관리에 관한 사항<개정 2022.02.28.>
- 3. 학과 및 전공의 개설, 명칭변경, 정원조정, 통합, 폐과, 분리 등에 따른 잔존학생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<개정 2022.02.28.>
- 4. 대상 학과 및 전공에 대한 구조조정(안) 심사 및 결정 <조 신설 2020.03.03.><개정 2022.02.28.>
- 제4조(구조조정 절차) ① 본 규정 제3조에 의거 구조조정 대상 학과 및 전공에 포함된 학과, 또는 입학정원의 감축 및 증원이 필요한 학과 및 전공은 구조조정 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. <개정 2020.03.03., 2020.09.25., 2022.02.28.>
 - ② 제1항에 의거 대상 학과 및 전공의 구조조정 계획서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구조조정(안)을 작성한다.<개정 2020.03.03., 2022.02.28.>
 - ③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구조조정(안)은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조조정(안)을 공고하고, 의견의 수렴 및 반영을 결정한 후 구조조정(안)을 확정한다.<개정 2020.03.03.>
 - ④ 확정된 구조조정(안)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총장이 구조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, 제안된 의견이 없는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<개정 2020.03.03.>
- 제5조(구조조정 대상학과 및 전공의 의무) ① 구조조정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구조 조정(폐과, 교원수 조정, 신규학과 및 전공의 개설, 학과 및 전공의 명칭 변경, 학과 및 전공의 간 통합, 학과 및 전공의 성격 조정 등)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3.03., 2020.09.25., 2022.02.28.>
 - ② 구조조정 대상학과는 구조조정(안)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안에 따라 즉시 구조조정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03.03.>

제6조(폐과 및 소속 전임교원) 삭제 <2020.03.03.>

제6조의2(폐과교원의 소속변경 신청) ① 폐과교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속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폐과 교원의 전공이 활용 가능한 학과 또는 전공으로 소속변경



문서번호	BSKS-1-1-37
제정일자	2012.02.27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12

- 2. 신설학과 또는 전공 개설을 통한 소속변경<개정 2022.02.28.>
- ② 전항에 따른 소속변경은 각 호별 1회에 한하여 1개 학과 또는 전공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.
- ③ 전1항에 따른 소속변경은 재직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다. <조 신설 2020.03.03.>

제6조의3(교원의 소속변경 절차) ①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폐과교원의 소속변경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.

- 1. 교무처장은 모집정지결정일 즉시 폐과교원에게 신입생 모집 정지와 폐과교원소속변경절차 등에 관한 안내를 통지한다. <개정 2020.09.25.>
- 2. 폐과교원은 전 호의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"폐과교원 소속변경 신청서"[서식 제1호]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. <개정 2020.09.25.>
- 3. 폐과교원 소속변경신청서를 받은 학과의 장은 소속 전임교원의 협의를 거쳐 "폐과교원 소속변경 요청에 대한 학과 의견서" [서식 제3호]를 작성하고 소속 전임교원 전원의 서명을 첨 부하여 3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. <개정 2020.09.25.>
- 4. 교무처장은 전호의 "폐과교원 소속변경 신청서"와 "폐과교원 소속변경 요청에 대한 학과 의견서"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의뢰한다. <개정 2020.09.25.>
- 5. 위원회의 각 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"폐과교원 심사 평정표" [서식 제4호]를 작성한다. 이 때 위원회는 그 의결을 통하여 소속변경을 신청한 교원과 폐과교원이 소속변경을 희망하는 학과장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6. 위원장은 "폐과교원 심사 결과표" [서식 제5호]에 각 항목에 대한 위원별 점수를 기재한 후 항목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하고 해당 교원의 소속변경 가부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한다. 항목별 평균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- 7. 교무처장은 전호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승인일 즉시 신청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 <개정 2020.09.25.>
- ②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폐과교원의 소속변경은 전항 제1호의 안내 또는 전항 제7호의 승인거부 통보를 받아 신설학과 및 전공 개설을 통한 소속변경을 원할 경우 신청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.<개정 2022.02.28.>
- 1. 전항 제1호의 안내 또는 전항 제7호의 승인거부 통보를 받은 교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"신설학과 및 전공 개설을 통한 교원 소속변경 신청서" [서식 제2호]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9.25., 2022.02.28.>
- 2. 교무처장은 전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변경 절차를 진행한다. <개정 2020.09.25.>
- 3.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신청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 <조 신설 2020.03.03.> <개정 2020.09.25.>

제6조의4(재심사) ① 소속변경신청교원이 심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재심사를 원할 경우에



문서번호	BSKS-1-1-37
제정일자	2012.02.27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5/12

는 1회에 한하여 "폐과 교원의 소속변경에 따른 재심사 요청서" [서식 제6호]와 필요한 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9.25.>

② 교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과를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<조 신설 2020.03.03.> <개정 2020.09.25.>

제6조의5(폐과교원의 직권면직) 폐과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 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.

- 1. 제6조의2에 따른 소속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교원(신청서 제출기한 내 미제출 교원 포함)
 - 2. 구조조정 규정에 정한 바,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절차 또는 조치에 불응하는 교원
- 3.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학과 및 전공 소속변경이 되지 않은 교원 <조 신설 2020.03.03.><개정 2022.02.28.>

제6조의6(폐과교원의 소속 학과 잔존) ① 폐과가 예정된 학과 또는 전공의 학사운영을 위하여 직권면직 대상인 폐과교원은 폐과소속 잔존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개 학기에 한한다. <개정 2022.02.28.>

- ② 폐과교원의 소속 학과 또는 전공 잔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결정한다.
- ③ 잔존 교원의 급여는 기존 급여의 30% 이내의 범위에서 삭감할 수 있다. <조 신설 2020.03.03.>

제7조(기타사항) ① 구조조정은 학교의 정책 및 여건과 부합되어야 하며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실시한다.

- ② 신규학과 및 전공의 개설은 전임교수 2인 이상이 신청하여 학과 및 전공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을 말하며 학교의 정책 및 여건과 부합되어야 하고, 구조조정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거쳐 학과 및 전공을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. 신규로 개설된 학과 및 전공은 개설된 당해연도의 입시결과와 재학생 충원율을 지표로 하여 구조조정과 관련한 평가를 받도록 한다. <개정 2020.03.03., 2022.02.28.>
- ③ 교수의 학과 및 전공 이동은 전공유사성, 전입학과 교수 의견, 본인 희망학과, 교수업적 평가를 고려하여 총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22.02.28.>
- ④ 삭제 <2020.03.03.>
- ⑤ 총장은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위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
- ⑥ 구조조정이 확정된 학과 및 전공의 재학생 및 복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 및 전공으로 전과 규정에 의하여 전과를 할 수 있다.<개정 2022.02.28.>
- ⑦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제반사항은 최종적으로 총장이 결정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37
제정일자	2012.02.27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6/12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2.1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로 『산학처』를 『산학·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5.12.24.)에 의하여 『산학·취업처』를 『산학 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『교학처』를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37
제정일자	2012.02.27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7/12

[서식 제1호]<신설 2020.03.03.> <개정 2020.09.25., 2022.02.28.>

폐과 및 전공 교원 소속변경 신청서

현소속	계열(학과) 전공	직 급	성 명	
변경 희망 학과/전공				
변경사유				
변경 학과/전공 기여사항				

본인의 소속 학과 및 전공을 변경하고자 소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위 신청인 : (인)

※ 첨부 1. 자기계발계획서

교무처장 귀하



문서번호	BSKS-1-1-37
제정일자	2012.02.27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8/12

[서식 제2호] <신설 2020.03.03.> <개정 2020.09.25., 2022.02.28.>

신설학과 및 전공 개설을 통한 폐과교원 소속변경 신청서

현소속	계열(학과) 전공	직 급	성 명	
신설 희망 학과/전공				
신설사유				
신설 학과/전공 운영계획 요약				

신설학과 및 전공 개설을 통한 학과 소속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위 신청인 : (인)

※ 첨부 1. 신설학과 및 전공 운영계획서

교무처장 귀하



문서번호	BSKS-1-1-37
제정일자	2012.02.27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9/12

[서식 제3호] <신설 2020.03.03.> <개정 2020.09.25., 2022.02.28.>

폐과교원 소속변경 요청에 대한 학과 및 전공 의견서

폐과	학과	7] 그	서 대	
소속	전공	식 급	성 병	

항목	의 견
신청교원의 희망 학과와의 전공 관련성	
신청교원의 희망 학과 및 전공의 과목 에 대한 강의 적절성	
신청 학과 및 전공에의 기여도	
	종 합 의 견

본 학과 또는 전공에 소속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학과장	교원	교원	교원	교원	교원	교원

교무처장 귀하



문서번호	BSKS-1-1-37
제정일자	2012.02.27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0/12

[서식 제4호] <신설 2020.03.03.> <개정 2022.02.28.>

폐과교원 심사 평정표

利利亚拉·省尔·多多五									
폐과소속	학과 전공	직 급		성 명					
	심사기준	배 점	평가점수						
학과 의견서	1	30							
전공기여도	및 자기계발 계획	30							
교육 및 연	구역량	20							
교원으로서	의 품위 및 성실도	10							
대학 기여도	E 및 발전 가능성	10							
	합 계	100							
이이 가지 사기로 보고됩니다									

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위 원: (인)



١		
	문서번호	BSKS-1-1-37
	제정일자	2012.02.27
	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	페이지 수	11/12

[서식 제5호] <신설 2020.03.03.> <개정 2022.02.28..>

폐과교원 심사 결과표

폐과소속	학과 전공			직 -	직 급			성	성 명					
심사기준		배점	위원1	위원2	위원3	위원4	위원	<u>1</u> 5	위원6	위원7	위원	<u>!</u> 8	위원9	평균
학과 의견서		30												
전공기여도 및 자기계발 계획		30												
교육 및 연구역량		20												
교원으로서의 품위 및 성실		10												
대학 기여도 발전 가능성	및	10												
총 계	1)	100	최종 취득점수											
				위외	가 같이 심				합니다.					
					년	월	Ç	길						

위원장:

(인)



문서번호	BSKS-1-1-37
제정일자	2012.02.27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2/12

[서식 제6호] <신설 2020.03.03.> <개정 2020.09.25., 2022.02.28.>

폐과교원의 소속변경에 따른 재심사 요청서

현소속	학과 전공	직 급	성 명	
변경계열, 학과				
재심사 요청사유				
변경계열 학과 및 전공 기여사항				

본인의 소속 학과 및 전공을 변경하고자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위 신청인: (인)

* 첨부 1. 증빙서류교무처장 귀하